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가칭 : 전주 에코시티) 상업용지(C2,C3,C4,C5) 매각 공고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상업용지(C2,C3,C4,C5)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4 월 18 일

전 주 시 장

1. 매각재산

○ 매각 대상

구분	위치	면 적		건폐율	용적율	층수		매각 예정가격 (천원)	비고
		㎡	평			최고	최저		
C2	상업 2	12,060	3,684	70% ↓	500% ↓	10층 ↓	제한×	28,857,637	창고형 대규모 점포 불가
C5	상업 5	10,433	3,156	〃	〃	〃	〃	22,144,856	대규모 점포 불가
C3	상업3-⑤-1	1,100	332	70% ↓	500% ↓	15층 ↓	제한×	2,841,660	숙박시설 불가
	상업3-⑤-2	1,117	337	〃	〃	〃	〃	2,142,056	숙박시설 불가
	상업3-⑤-3	1,054	318	〃	〃	〃	〃	2,021,298	숙박시설 불가
C4	상업4-①-1	1,721	521	70% ↓	500% ↓	제한×	8층 ↑	3,230,900	
	상업4-①-2	1,650	499	〃	〃	〃	〃	3,261,814	

○ 허용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종교집회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C2 : 창고형 대규모 점포, C5 : 대규모 점포 제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C3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부속용도로서의 발전시설

○ 매각 방법 : 일반 공개경쟁입찰 (온비드 전자입찰)

○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10%이상(※ 매각예정가격의 10%가 아님)

○ 공급 조건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일시완납 또는 6개월 이내 분할납부

※ 금회 매각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본 공고 첨부물과 2017. 3. 24일 (변경)고시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매각일정 및 장소[※인터넷 접수만 가능]

구 분	일 정	장 소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2017. 5. 10(수) 10:00~ 2017. 5. 15(월) 16:00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http://www.onbid.co.kr)
개 찰	2017. 5. 16(화) 10:00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입찰집행관PC)
낙찰자 발표	2017. 5. 16(화) 11:00 이후	전주시 홈페이지
매매계약 체결	2017. 5. 16(화) ~ 5. 22 (월) (10:00 ~ 16:00)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본청 5층)

- 상기 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은 인터넷을 이용, 토지입찰을 실시하는 시스템입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매각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매각 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입찰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과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찰 결과는 온비드 및 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 금회 입찰 후 유찰된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일정에 따라 재입찰 공고할 예정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일반 실수요자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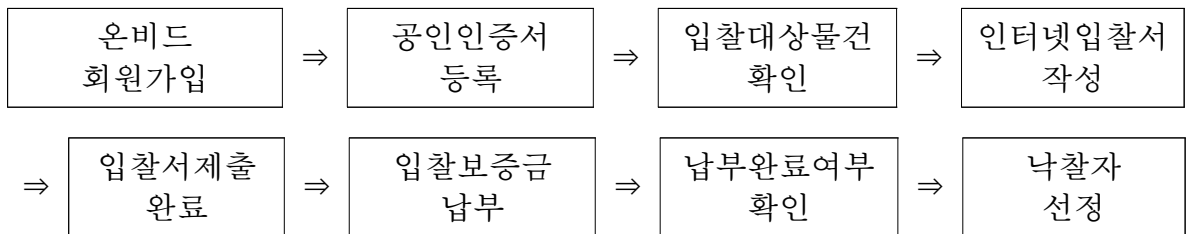
- 1) 입찰신청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온비드』 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우편 또는 현장접수 불가)

◇ 입찰 참가 가능 공인인증서

회원유형	등록(발급) 가능 공인인증서
개인회원	· 전자거래범용 개인 공인인증서, 온비드전용 개인 공인인증서
개인사업자회원 법인회원	· 전자거래범용 기업(법인) 공인인증서, 온비드전용 사업자 공인인증서
공공기관회원	· 전자거래범용 기관(법인) 공인인증서, 온비드 전용 기관(법인) 공인인증 전자서명(GPKI) 인증서

※ 금융기관(인터넷뱅킹) 이용을 위한 무료공인인증서로는 입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입찰기간 전에 공인인증기관 등을 통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절차



- 2)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입찰신청 시 개인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참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4)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 대표자는 공동 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동대표자 1인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 fax) 063-281-5290 / 대표자 선임계 작성 제출(붙임서식 참조)

- 5)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 『전자서명방식』을 통해 공동 입찰자 전원이 각각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동입찰서에 전자서명 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동일인(법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법인대표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동일업체(법인)로 간주하며, 동일인(동일업체) 여부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6) 입찰신청 완료 후에는 변경 / 취소 / 철회를 할 수 없으며, 입찰 시와 계약 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 7) 입찰에 대한 자세한 참가절차 및 온비드 이용약관 등 신청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 결정은 매각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 1인 입찰이라도 매각 예정가격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이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반환

○ 입찰보증금 납부(온비드)

- 1) 납부금액 : 입찰보증금은 본인이 입찰할 금액에 대한 100분의 10이상을 온비드에서 지정한 신청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2) 납부방법 : 입찰시 지정계좌 이체
- 3) 납부계좌 :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중 택1(온비드 가상계좌)

○ 입찰보증금 반환

- 1)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2)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반환은 입찰자가 입찰 신청 시 지정한 반환계좌로 입금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3) 반환계좌의 명의를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입찰 무효 및 귀속

○ 입찰(낙찰) 무효사항

- 1) 입찰이 허위로 판명된 때
- 2)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때
- 3) 입찰보증금이 매각예정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일 때
- 4) 기타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입찰보증금 귀속

- 1)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입찰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 2) 서류미비,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7. 계약 체결

- 공고문에 명시된 계약체결 기간 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개 인	· 신분증, 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공 통	· 계약보증금 납부 영수증(입찰보증금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 추가납부 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첨부 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급공고일 이후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대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8. 매각 예정가격 결정 및 대금납부방법

○ 매각 예정가격 결정방법

- 1) 금회 매각할 체비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체비지 매각에 따른 소요비용(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2) 시가의 기준은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1)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 이상)

- 입찰보증금이 계약보증금으로 자동 대체됩니다.
- 다만,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계약체결 당일(16:00 이내) 입찰자(매수자와 동일해야함)의 이름으로 입금하신 후, 입금증(사본)을 지참하시고 계약체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계좌

※ 농협 : 301-0186-7443-81 예금주 : 전주시청

(입찰보증금 계좌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매각대금(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된 입찰보증금 포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일시완납 또는 6개월 이내 분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납부방법(납부기일)	비 고
일 시 납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6개월 분납	계약금(10%)	입찰보증금(10%)으로 대체	
	분할납부금(50%)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40%)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다만 우리시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나,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대금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고지는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으로 납기일 이내에 반드시 매수자 이름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연손해금

- 1) 매각대금(정산금 포함)을 3.항 [○ 대금납부방법 2)항] 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매수자는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요금(아래 요금표 참고)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기간	연체기간별 연체 이자율
30일 이하	6%
30일 초과 90일 이하	7%
90일 초과	8%

- 2) 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해당 연체요율을 적용하며, 위 표에 명시된 이율은 시 금고 이율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9.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2) 매수자가 허위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 3)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당해 체비지에 대하여 전주시의 승인 없이 전매·양도,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4) 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 5) 조성 사업 진행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전주시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토지 사용시기가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주시의 책임으로 매수자와 전주시간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토지사용시기의 익월 시작일로부터 전주시가 매수자에게 통지한 토지사용시기가 12개월 이상 지연될 때

- 6) 매각한 체비지가 확정측량 결과 매매계약 체결당시 보다 면적이 10% 이상 증감되어 매수자가 해제를 요청할 때
- 1)호 내지 4)호에 따라 계약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보증금은 전주시에 귀속되며, 나머지 기 납부한 매각대금은 매수자에게 환불하고,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매수자가 전주시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이후 1)호 내지 4)호에 의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비지를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대로 회복하여 전주시에 인도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에 매각대금이 반환됩니다.
 - 5)호 및 6)호에 따라 계약하였을 경우 기 불입한 매각대금은 환불 기간까지 경과일수에 대하여 금융기관(시금고)의 일반대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환불하되 5)호는 그 토지사용시기의 지연 기간이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6)호는 매수자가 전주시로부터 지적 면적 증감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만 이자를 지급합니다.

10. 토지사용, 면적정산, 소유권이전, 제세공과금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사용

- 1) 매수자는 토지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하며,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매수자는 매각대금 납부 완료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각종 인허가 및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확정측량 진행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우리시에 별도의 사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우리시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 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 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4)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후 관리할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면적 정산

- 1) 금번 매각 토지는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으로 공급하는 토지로서, 현재 진행 중인 확정측량 실시 결과 다소의 토지 형상 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다만, 확정측량 완료 전 매수자의 건축 사업을 위한 인허가 과정상 지적면적이 감소된 경우 그 면적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이전

- 1)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하며,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 제세공과금

- 1) 매각토지의 최종 잔금 납부약정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우리시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잔금납부약정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 선납)에는 토지사용 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매수자가 매각대금 완납 전에 우리시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잔금 납부약정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그 잔금을 납부한 날을 잔금납부약정일로 봅니다.
- 3) 취득세 등은 취득일(소유권이전일과 대금완납일 중 빠른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으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명의변경

-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
 -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
 - 3)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 시행 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8호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 상기 사항의 사유로 주무부장관 및 기관 등의 명의변경 동의를 있을 때
 - 4)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해당할 때
- 명의변경 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동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유의 사항

- 1) 공급공고문, 매수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은 입찰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교통·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지구단위계획, 에너지공급계획 등 지구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건축법, 조례 포함), 주차장법,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건축제한사항 등 건축 당시의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입찰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단,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함)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 자료는 우리시 신도시사업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3) 향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교통·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인허가 조건사항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승인하기로 합니다.
- 5)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6) 매수자는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현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7) 매수자는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시와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포장·세륜시설 등) 및 임시가시설(웬스, 우·오수 배수시설 등) 등의 개설 필요시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8) 매수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거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건축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준수하여야 합니다.
- 9) 건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자의 비용부담으로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기·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등을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10) 원 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자 비용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사용승낙을 득한 후 토지 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11) 매수자는 건축행위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 1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공급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책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13) 매수자는 공급토지 서측에 위치한 전주 항공대대가 현재 타 지역으로 이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전 완료시까지 항공기 이·착륙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및 전파방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 상태이며, 또한 매수자는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입찰 신청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4) 금번 매각 토지는 2017. 3. 24일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등이 변경되었으며, 이를 확인하고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15) 교통수단, 학교, 관공서등의 설치는 관련 기관의 계획에 의하며, 이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한 토지의 사용시기보다 설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16) 이자산정(지연손해금 등)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17) 기타 사항은 『도시개발법』,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 시행조례 및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1) 전자입찰관련 문의는 온비드(<http://www.onbid.co.kr>, ☎ 1588-5321)
- 2) 기타 문의는 신도시사업과 에코시티팀(☎ 063-281-51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